

사회복지법인 에버그린복지재단
2025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소집통지일	2025년 12월 09일	통지방법	공문 발송(이메일)
개최일시	2025년 12월 18일 (목) 17:00		
개최장소	전자적방법(비대면 회의)		
참석 임원	총 7명중 6명 (출석이사 7명 중 6명) *감사2명은 임기만료됨		
	이사 (6명)	이현경, 송수종, 배진석, 김창만, 곽태훈 김정희	
	감사 (0명)		
불참 이사회	이사 (1명)	변소현	
	감사 (0명)		
회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25년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 ② 2026년 법인 및 산하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③ 법인감사 선임안 ④ 기타안건 		

II. 회의내용

본 이사회는 비대면(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의의 공정성과 참석 이사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회의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고, 회의 진행 중 참석 이사 전원의 얼굴이 확인되는 화면을 캡처하여 회의록에 첨부하기로 함

1. 개회선언

의 장 (이현경) 이사장은 먼저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정족수 산정 과정에 착오가 있음을 언급하고, 해당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이사들에게 사과하였다. 참석한 이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겠다고하였다. 이후 2025년도 사회복지법인 에버그린복지재단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를 선언하였다.

2. 성원보고

사무국장 (이연주) 이사회 이사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기에 성원됨을 보고하였다. 감사 2명은 임기만료 (2025년12월8일)로 소집통보 제외되었음을 함께 설명하였다.

- ✓ 참석 : 이현경, 송수종, 배진석, 김창만, 곽태훈, 김정희
- ✓ 불참 : 변소현

3. 전 회의록 채택

사무국장 (이연주)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채택 안건을 상정하였다. 해당 회의록은 2025년 12월 9일 이메일을 통해 이사들에게 사전 배포되었으며, 회의록 하단에는 김정희 이사, 곽태훈 이사, 송수종 이사가 제출한 회의록 날인 거부 사유를 제출받은 원문 그대로 기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의가 없을경우 회의록 낭독은 생략하고 승인 여부를 의결하자고 한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이 사 (배진석)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를 언급하며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 전원이 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날인 거부 상태로 회의록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 사무국장 (이언주) 거부 의사가 명확히 제출된 상황에서 날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해당 사유를 회의록에 명기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이 사 (김정희) 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이 이미 주무관청에 제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사무국장 (이언주) 날인 거부 사유를 기재한 상태로 12월 15일에 제출되었음을 밝혔다.
- 이 사 (김정희) 해당 회의록에 '이사 전원 찬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의록을 그대로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사무국장 (이언주)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중 안건 심의 부분을 중심으로 낭독을 진행하였다. 특히 폐회 후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안건이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해당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서 재심의하기로 기록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비대면 이사회 캡처본 첨부와 이사의 날인거부 사유를 기록한 사실을 낭독하였다. 김정희 이사가 제기한 '전원찬성'이라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 이 사 (송수종) 3차 이사회에서 정족수 오류로 인해 두 개의 안건이 부결되어 다시 심의, 의결하는 과정임을 재차 되묻고, 추천된 감사도 심의 의결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 사무국장 (이언주) 네, 맞습니다라고 확인하였다.
- 이 사 (김창만) 감사 선임에 대한 정관이라던지 감사 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보통 관례로 운영해온 부분도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데 그동안 이사가 감사 추천해왔던 부분에 대해 이사장에게 직접 질의 하였다.
- 의 장 (이현경) 네 라고 답변하였다.
- 이 사 (김창만) 절차적으로 이사장, 이사 누구나 추천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가지고 감사를 선임해 나갈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안에 대한 논의 이전에 제3차 이사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며,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요청하였다.
- 이 사 (송수종) 이에 이사가 모여 회의하는 자리에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사가 자유롭게 의견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차 임시이사회 결과는 1안 부결, 2안 가결, 3안 부결로 이해하면 되는지 재차 확인하였다.

이 사 (김창만) 발언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닌, 이사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그것을 가결하는 자리인데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발언으로 심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것이라 말하였다.

사무국장 (이연주) 이사들에게 현재 전 회의록 채택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안내하였고, 아직 감사 선임안이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안건 상정 후, 그리고 뒤에 기타 안건에서 논의하기를 건의하였다.

이 사 (김정희) 김창만 이사님의 '안건 외에 말할 수 없다' 는 원칙은 이해하지만, 회의 안건의 효력에 대한 확인 과정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제2차 회의록 채택에 대한 '전원찬성'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해당 회의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와 정정 요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다.

사무국장 (이연주) 제2차 회의록 채택을 반대하였는데, 찬성으로 기재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지를 다시 질의하였다.

이 사 (김정희) 이에 반대 의사가 아닌, 회의록에 관한 의견서를 메일로 발송하였는데 그것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요청하였다.

사무국장 (이연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회의록은 이사회 당시에 발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 사 (김정희) 또한 이메일을 통해 김정희 이사, 송수종 이사, 곽태훈 이사가 제4차 임시 소집 요청한 사실, 소집 요청시 감사 선임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지만, 해당 소집요청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받지 못하고, 4차 이사회에 참석 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감사 후보를 먼저 이사회에서 받아주시고,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이언주) 메일은 확인하였으나, 시기가 4차 임시이사회 소집공고 이후 발송된 메일이었으며, 이에 이미 소집공고가 발송되었음을 안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4차 임시이사회가 가결 정족수의 오류로 인한 재심의 이사회이기 때문에 안건을 변경하여 상정하지 못한 점을 설명하였다.

이 사 (김정희)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사 (김창만) 전차 회의록 채택에 대해 재청하였다.

의 장 (이현경) 전차 회의록 채택에 찬성의 의견을 물었다.

이 사 (송수종) 3차 이사회 안건의 효력과 3차 회의록의 기록 여부를 재차 확인 후 찬성 의사를 표하였다.

<전원 의결 동의 표시>

사무국장 (이언주) 전 회의록이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안건상정과 의결

사무국장 (이언주) 2025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안건을 상정하였다.

제1호 안건: 2025년 산하시설 추가경정 예산안

제2호 안건: 법인 감사 선임안

4-1) 2025년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 (이언주) 제1호 안건에 대한 보고 중 에버그린 하우스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였다. 서울시 인건비 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 필요성, 세출 계정 분류 오류 정정, 지정후원금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 물가 상승과 하반기 사업 집중에 따른 운영비 조정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되었다. 질의 요청후 질의가 없자.

이 사 (김창만) 에버그린 하우스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을 재청하였다

이 사 (곽태훈) 가결에 동의하였다

<전원 의결 동의 표시>

사무국장 (이연주) 산하시설 폴레랑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위해 담당 시설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였다.

<전원 동의 표시로 김지한 시설장이 회의에 참여하였다>

폴레랑스 (김지한) 폴레랑스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직원 퇴사 시 설 장 로 인한 인건비 감액, 운영비 일부 증액, 식자재비 및 교육·자원사업비 증액 사유, 보조금 반납금액 조정 등 세입·세출 변동 내역을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설명하였다.

<질의 요청후 질의가 없자>

의 장 (이현경) 찬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출석이사 6명 전원이 찬성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25년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4-2)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무국장 (이연주) 다음 안건 상정 전,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출석이사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당시 찬성 의사를 밝히신 이사 4인의 의결 의사가 현재도 동일한지 재확인을 요청하였다.

이 사 (송수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예산(송도 폴레랑스)안을 확인 후 직원 숫자에 대해 물었다.

사무국장 (이연주) 현재 예산안에는 정규직원 1명으로 계획하였고, 현재 정직원 고용된 직원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 (송수종) 세입 예산이 줄어는 것에 대해 물었다.

사무국장 (이연주) 사업에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세입을 줄인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사 (송수종) 2025년에 직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 사무국장 (이언주) 25년에 정직원이 없다고 답변 하였다.
- 이 사 (송수종) 어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 하였다.
- 사무국장 (이언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카페운영과 공간임대 두가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하였다.
- 이 사 (송수종) 직원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며 재질문 하였다.
- 사무국장 (이언주) 이에 4대보험을 적용하는 정직원 없이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 이 사 (배진석) 송도 플라망스에 대해 시설과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설명을 요청하였다.
- 사무국장 (이언주) 배진석 이사의 2025년 3월 선임 후 첫 이사회회의록에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기록 되어있으며, 송도 플라망스라고도 지칭하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 이 사 (배진석) 송도 플라망스의 시설장이 현 이사장인 이현경으로 되어 있는 점을 확인 하고, 시설장 직위의 법적 요건(상근 여부)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사무국장 (이언주) 송도 플라망스의 경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 이 사 (배진석) 그것과 무관하게 시설에 시설장으로 전업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사무국장 (이언주) 배진석 이사님의 지적 사항을 확인 후 다시 보고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 이 사 (배진석) 이러한 법적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 사 (송수종) 예산안의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2025년 예산 수치가 '실적'이 아닌 '계획'임에도 이를 기준으로 2026년 예산 증감만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사무국장 (이언주)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보통 3월 정기이사회 결산안으로 제출한다고 대답

하였다.

- 이 사 (송수종) 그렇다면 최소한 2025년 가결산 수준의 자료가 제시되어야 2026년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무국장 (이언주) 이에 모든 법인과 산하시설에 가결산 수준의 자료가 제시를 요청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 이 사 (송수종) 네 라고 답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 이 사 (곽태훈) 예산안이 부결되면 산하시설의 직원들 급여지급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 사무국장 (이언주) 추경안과 예산안은 24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 하였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보고 할 때 가결산 등의 자료를 요청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서류가 미제출 되었을 때 통장 사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산하시설로부터의 전달받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산하 시설의 예산안은 다른 과정을 거쳐 최종이사회에 상정되는데, 부결시 이사회에만 재상정되는 사항인지, 또 다른 절차를 거쳐 재상정되어야 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 이 사 (곽태훈) 예산 집행의 시급성과 운영에 대해 공감하지만, 의문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기에 부담이 있다며 기권 의사를 표명하였다.
- 이 사 (김정희) 예산안 승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명확한 자료로 검토 후 판단하고 싶다고 보류(기권) 의사를 밝혔다.
- 이 사 (김창만) 예산은 집행 계획이며, 실제 집행의 적정성은 이후 감사와 결산 등의 심의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정 기한 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의 장 (이현경) 이사들의 이야기에 확인할 부분도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 예산안의 의결은 주무관청에서 제출 기한이 12월 24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미제출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발생하기에 차후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사무국장 (이언주) 이사들의 의견 확인하였습니다.
출석이사 6명 중
✓ 찬성(2명) : 이현경, 김창만
✓ 반대(1명) : 송수종
✓ 기권/보류(3명) : 김정희, 배진석, 곽태훈
** 제3차 임시이사회 동일 안건에서 찬성의사를 밝혔던
송수종 이사는 '찬성->반대' / 곽태훈 이사는 '찬성->기권/보류'
의견으로 변경됨을 기록합니다.

의 장 (이현경) 2026년 법인 및 산하시설의 예산과 사업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4-3) 법인 감사 선임안

사무국장 (이언주) 2호 안건. 법인 감사선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천된 후보자는 회계 세무 감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이영욱과 사
회복지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현재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박용
창를 법인 감사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이유를 말하였다.

의 장 (이현경) 감사선임안에 대해 찬성한 분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해달라 요청하였
다.

이 사 (김정희) 절차에 관련된 입장을 말하였다 4차 이사회 소집과정에서 혼선이 있었
던 사실에 대해 소집요청은 법인 통보이전에 공식적으로 메일을 보냈다
고 말하였다. 이에 안건 구성을 소집요청 취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말했다.
안건을 그대로 상정하리 의견에 이사회안 추천한 감사 후보 선임 절차
에 관해 논의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말하였다.

의 장 (이현경) 방금 이야기 하신 부분은 기타 안건으로 다루주시고, 이번 이사회는 재
심의 이사회이므로 제3차 임시 이사회 상정되었던 안건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고자 함을 말하였다. 감사 선임안에 대한 절차에 대한 의견은 기
타 안건에서 진행하자고 건의하였다.

<질의 요청 후 질의가 없자>

의 장 (이현경) 감사 선임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였다.

사무국장 (이언주) 이사들의 의견 확인하였습니다.
출석이사 6명 중
✓ 찬성(2명) : 이현경, 김창만
✓ 반대(4명) : 송수종, 김정희, 배진석, 곽태훈

의 장 (이현경) 감사 선임안이 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4-4) 기타안건

사무국장 (이언주) 기타 안건 논의 시작하며, 논의 안건을 요청하다.

이 사 (김정희) 감사 선임안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 사 (김창만) 기타 안건의 자격 충족 요건에 대해 문의하였다.

사무국장 (이언주) 기타안건은 자유롭게 논의하며, 논의 과정을 거쳐 차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 할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는 당회 가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추가 설명하였다.

이 사 (김창만) 법인에 감사 추천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사무국장 (이언주) 감사 추천에 대한 절차 등은 확인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전 회의록을 보면 대표이사님이 추천받아 그중 최종후보자를 선임안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 사 (김정희) 정관 3장 16조(임원의 선임)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라고만 되어있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사회에 후보를 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사가 감사 후보를 내어주고 이사회 후보자를 제안한 후 그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놓고 심의하자는 의견을 말하였다.~~
이번 선임안은 일방적으로 가,부 여부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이사회때 심의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사 (김창만) 이전 법인 운영때에도 모든 후보들에 대한 이력서를 받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한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 사 (김정희) 늘 해왔던 일이고, 정관에 의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과거는 어떠했던 지금 정관에 따라서 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하였다.

- 의 장 (이현경) 이전 이사회기록 자료를 찾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 이 사 (김창만) 감사 후보에 대한 자격 조건이나 제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질문하였다.
- 이 사 (배진석) 예산 30억이 넘을 경우는 있지만, 법에 별도의 감사 자격 조건은 없는 것 같다고 답하였다.
- 이 사 (김정희) 주변에 괜찮은 분 있으면 추천할 수 있는 것이라 답변하였다.
- 이 사 (배진석) 정관에서는 그냥 이사회에서 심의 선출한다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일임한다거나 세부적인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 말하였다.
- 이 사 (김창만) 감사의 자격에 논의가 필요하다 말하고, 감사도 임원인지를 재확인 하였다.
- 이 사 (배진석) 감사도 임원이라고 답하였다.
- 이 사 (김창만)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로 직원을 선발하듯 감사의 추천, 선정에 대한 인원수, 자격조건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감사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할것인지, 이사장에게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절차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규정에 포함시키는 부분까지 오프라인에서 회의의 연속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이 사 (김정희) 동의합니다.
- 사무국장 (이연주) 더 논의하실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 이 사 (송수종) 나이가 젊은 분들이 감사로 선임되기를 요청하였다.
- 이 사 (배진석) 감사 임기 종료에 대해 확인 요청하였다.
- 사무국장 (이연주) 임기는 2025년 12월 8일자로 종료되었다고 답하였다.
- 이 사 (배진석)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시 2개월 이내에 보충하라고 법률로 명시 되었으며, 기한이 많이 남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5. 폐회 및 공지사항

의 장 (이현경) 이상 모든 안건의 심의, 의결이 완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 감사드리며 2026년 12월 18일 사회복지법인 에버그린 복지재단 제4차 임시이사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기록에 남기기 위하여 참석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2025년 12월 18일

사회복지법인 에버그린복지재단

출석 이사

이사장

이현경



이사

송수종



이사

배진석



이사

곽태훈



이사

김창만



이사

김정희



